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5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정청래·이건태·백승아

박균택 · 김용만 · 이병진

손명수 · 이상식 · 김병주

강선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국무위원 등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 및 현안 등을 확 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1조의2(불출석 등의 죄) ① 제121조에 따라 요구서를 송달받은 국무위원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1일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② 제121조제3항 및 제1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국무위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21조의2(불출석 등의 죄) ①
	제121조에 따라 요구서를 송달
	받은 국무위원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
	석요구일 1일 전까지 의장 또
	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
	를 제출, 허가를 득하여야 한
	<u>다.</u>
	② 제121조제3항 및 제121조의
	2제1항을 위반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국무위원 등은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